

김병준, 「한군현과 한반도의 인구 이동과 정착」에 대한 토론문

안정준(서울시립대학교)

※ 이 글에서는 漢이 변경에 거주하는 주민과 외래 유입된 주민, 그리고 외부로 도망친 자 등을 어떻게 규정했고, 또 어떻게 지배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고조선 이후 낙랑군 시기의 주민 移住 양상이나 外來 유입된 주민에 대한 통치 사례가 기록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 글에서는 악록진간을 비롯한 여러 간독자료의 내용과 秦·漢代 邊郡의 사례 등을 통한 비교 연구를 하였다. 특히 진·한의 군현 경계에 둔 시설과 그 범위에 관련된 용어를 비롯해, 한 군현의 설치 이전에 유입된 주민을 한이 어떻게 규정했으며, 군현 설치 이후에 편입된 주민에 대해 각 부류별로 어떻게 지배했는지를 살핀 점은 낙랑군의 통치상을 규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완인 발표문을 읽었기 때문에 토론자가 이해한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그 견해를 분명히 파악하고자 하며, 이하의 질문과 지적이 발표자의 의도와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①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郭塞. ②秦滅燕, 屬遼東外徼. ③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涇水爲界, 屬燕. ④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⑤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涇水, 居秦故空地上下鄣, ⑥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

1. 발표자는 이전의 논문에서 『史記』 조선열전이 한과 고조선 지배층과의 혈연적·영역적 친연성의 강조, 그리고 한과 고조선과의 外臣 관계 수립과 고조선의 외신 의무 불이행이 전쟁의 원인이었음을 강조하는 등 한의 고조선 침공을 합리화하는 ‘서사’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¹⁾ 이러한 주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 발표문에서는 ⑤ 滿의 ‘亡命’은 법률용어로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가 完城且春의 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지명수배된 상태를 가리키며, ⑥의 故燕·齊亡命者는 전국시대에 燕·齊에서 도망간 자들로서 重罪 이상의 지명수배된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사기』 조선열전의 전반부는 일찍이 燕이 진번·조선을 복속시켰고, 이후 秦이 연을 멸한 뒤 遼東外徼에 소속시켜 관할하였으므로 이후 마땅히 한에 소속되어야 할 영역(縣)과 대상(진번·조선)을 ‘亡命’,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한 죄인인

1) 김병준, 2008, 「한이 구성한 고조선의 멸망 과정」, 『한국고대사연구』 50.

滿이 멋대로 취하여 통치하고 있는 상황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한과 고조선 지배층과의 <혈연적·영역적 친연성>을 거론했다기보다는 한에서 죄를 짓고 달아난 자들이 주축이 된 고조선 정권이 존립의 명분이 없고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서사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2. “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삼국지』 韓條 소인 위략)에도 燕·齊·趙民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들은 秦代에 ‘天下亂’으로 인해 점차 準에게 도망간 것이며, 同書 동이전 穢條에 의하면 그 숫자가 수만 명에 달한다고 되어 있다.²⁾ 한 왕조의 성립 이전에 외부로 이주해 간 이들을 굳이 漢代에 ‘亡命’, 즉 <중죄를 짓고 도망가서 지명수배된 자> 혹은 <도망죄가 중죄 이상이라서 지명수배된 자>로 규정했을지 의문이 든다. 발표자의 이전 연구에서도 ‘漢人’은 한왕조의 성립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이 燕·齊·趙民은 낙랑군의 설치 이후에도 ‘漢人’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것이며, 호적상 ‘원토착주민’으로 분류된다는 점, 亡律이 적용되는 대상은 한의 성립 이후 도망간 자들이라는 점을 언급한 적 있다.³⁾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한대 변경의 작은 현이었던 洞庭郡 遷陵縣의 호수는 28~35년 당시 대략 200호 전후로 판단되며, 휘하 3鄉, 10里 정도의 구성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지역의 토착민(新黔首) 인구 비율은 50% 이상이며 1호당 20~30명 이상의 비율로 戶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⁴⁾ 이는 소규모 집단의 수장을 戶主로 한 가운데 그 가족과 예하 여러 屬民(蠻夷)으로 구성된 집단이 編戶되어 戶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높은 戶當口數 비율을 이민족의 族的 결합이나 독특한 가족제도의 형태에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⁵⁾

다만 초원4년호구부에 보이는 낙랑군 각 현의 호당구수는 제1구역 최소4.5~최대6.28, 제2구역 최소6.41~최대8.4, 제3구역 최소6.3~최대8.2, 제4구역 최소4.4~최대8.2로 대체로 호당 6~7인 정도이며, 현마다 그 편차가 크지 않고 대체로 균일한 편이다. 만약 渠帥 예하 여러 屬民(蠻夷)으로 구성된 집단을 1호로 편성하였다면 구역별·현별로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또 수성·누방·혼미·패수·탄열현으로 이루어진 영서의 제3구역(7.24)이 남부도위가 있던 제2구역(6.82), 동부도위가 있던 제4구역(6.95)보다 호당구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점도 의외라는 생각이

2)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3) 김병준, 2008, 「낙랑군 초기의 편호과정과 ‘호한초벌’」, 『목간과 문자』 1, 166~177쪽.

4) “新黔首戶百 男冊六人 小男子圖...”

5) 김병준, 2015,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 변현과 군현지배」, 『한국고대사연구』 78

든다.

4. 漢代의 군현 정착민 가운데 '제2부류'로 구분한 蠻夷는 그 군장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縣道에 거주시키고 호적에 편입시키며, 이를 기초로 작위 사여, 토지 분급, 세금 수취, 요역 징발, 그리고 율령에 근거한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보았다. 또 제3부류인 屬國 소속의 이민족은 군장 질서 하에 故俗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군현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한 武帝 元狩3년(기원전 120) 이후 군의 하급기관이 된 속국의 주민은 名籍이 군현에 의해 장악된 가운데 요역과 군역의 부과 대상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한이 속국을 설치하여 그들의 故俗을 인정하고 그들의 군장 질서를 용인해준 배경은 흉노와 같이 유목생활을 하는 그들의 특성상 군현의 율령지배가 어려웠던 것이 원인이라고 하였다.⁶⁾

그렇다면 낙랑군이 설치된 한반도의 경우처럼 정착 생활을 하는 주민이 주류일 경우, 그들을 장악한 군현이 군이 제3부류와 같이 屬國을 두어 관리할 이유가 있을까. 즉 낙랑군이 설치된 지역에도 제2부류와 제3부류를 나누어 통치해야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 나누었다면 양자를 통치하는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6) 김병준, 2013, 「진한제국의 이민족 지배 -부도위 및 속국도위에 대한 재검토-」, 『역사학보』 217, 140~141쪽.